

2006년 해사노동협약상 선원 사회보장에 관한 연구

지상원*

* 한국해양대학교 해사수송과학부 교수

A Study on the Social Security for Seafarers of Maritime Labour Convention, 2006

Sang-Won Ji*

*Division of Maritime Transportation Sciences, Korea National Maritime University, Pusan 606-791, Korea

요약 : 국제노동기구가 2006년 2월23일 채택한 2006년 해사노동협약은 제4편 규정 제4.5조에 선원에게 적용되는 사회보장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이 협약을 비준하기 위하여서는 국내 관련법령이 협약상 선원 사회보장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불충분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정비할 필요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선원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약의 요건과 국내법의 차이를 밝히고, 이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관하여 그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핵심용어 : 선원, 선원법, 사회보장, 의료보험, 요양보상, 노령연금, 고용보험, 재해보상, 선박소유자, 국제노동기구, 해사노동협약.

ABSTRACT :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adopted the Maritime Labour Convention, 2006 on 23 February 2006. This convention contains the regulation about social security for seafarers in the Title 4. For the purpose of ratifying this Convention in our country,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domestic law and regulation concerned whether it fulfills or not the required conditions of the Convention. Therefore, this paper aims to find the difference between the domestic law and the convention, also suggest the way to solve the problems.

KEY WORDS : seafarers, seaman's law, social security, medical insurance, sickness benefit, old-age benefit, employment insurance, workmen's compensation, ship owner,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Maritime Labour Convention

1. 서 론

이 연구는 2006년 해사노동협약(Maritime Labour Convention, 2006: 이하 “협약”)상 선원의 사회보장에 관한 요건을 수용할 수 있도록 현행 국내 관련법령에서 개정이 필요한 부분을 중심으로 연구의 범위를 한정하여 협약의 요건과 국내법의 차이를 밝히고, 이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관하여 그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협약상 선원 사회보장

2.1 협약의 구성

협약은 전문과 일반적 의무, 정의와 적용범위, 기본권과 기본 원칙, 발효, 개정 절차 등을 규정한 16개의 본문 조문과 5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장은 강행규정인 규정과 기준(Code A) 및 임의규정인 지침(Code B)으로 구성되어 있다.

2.2 회원국의 책임

1) 관련 법령의 채택

각 회원국은 자국 선박에 고용된 선원에게 그들이 선원고용 계약에 의거 근무하고 있는 동안 발생하는 질병, 상해 또는 사망의 재정적 결과와 관련하여 선박소유자로부터의 물질적인 지원 및 보조에 대한 권리가 제공되도록 하기 위한 법령을 채택하여야 한다(규정 제4.2조 1항).

*대표저자 : 지상원(종신교수), swji@hhu.ac.kr 011)581-5823

2) 사회보장 보호의 제공

협약은 규정 제4.5조 이하에서 선원에게 사회 보장보호 제공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조항을 두고 있다.

3) 육상 근로자보다 불리하지 않을 것

협약은 선원과 그 부양가족이 육상근로자가 향유하는 사회 보장 보호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혜택을 받을 자격이 부여되도록 요구하고 있다.

5) 기국 책임

협약 규정 제5.1.1조는 일반원칙으로서 1항에 각 회원은 자국의 국기를 계양하는 선박에 이 협약의 이행을 확보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6) 선원 공급국 책임

회원국은 자국민 이거나, 자국에 거주하거나 그렇지 아니할 경우, 자국의 영토 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선원의 사회보장 책임이 이행하도록 하기 위한 책임을 진다.

2.3 선박소유자의 책임

1) 의료관리 비용의 부담

선박소유자는 자신의 선박에서 근로하는 선원의 직무개시 일자와 정당하게 송환될 것으로 간주되는 일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선원의 질병 및 부상과 관련한 비용을 부담할 책임이 있다.

2) 요양 중의 임금 지불

질병 또는 상해가 근로불능의 결과를 초래하였을 경우, 선박소유자는 그 선원이 선내에 체류하거나 또는 이 협약에 따라 송환될 때까지 임금전액을 지불할 책임이 있다.

3) 재정보증

선박소유자는 직업상 상해, 질병 또는 위험에 기인하는 선원의 사망 또는 장기적인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 보상을 보장하기 위한 재정보증을 제공하여야 한다.

4)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

국내법령은 상해의 발생일자 또는 질병의 개시일자로부터 최소 16주의 기간 동안 의료관리, 식사 및 숙박을 위한 비용을 부담하도록 선박소유자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

한편, 회원국은 국내법령을 통하여 다음 사항과 관련하여 선박소유자의 책임을 면제할 수 있다(기준 제A4.2조 5항).

① 당해 선박의 근무와 관계없이 발생한 상해

② 질병, 상해 또는 사망 선원의 고의의 부당행위에 기인한 상해 또는 질병, 그리고

③ 계약이 체결될 때 고의적으로 은폐된 질병 또는 질환

2.4 사회보장의 종류 및 보호방법

1) 사회보장의 종류

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보장의 종류는 의료관리, 질병급여, 실업급여, 노령급여, 고용관련 부상급여, 가족급여, 출산급여, 장애급여 및 유족급여의 9개 항목이 있다.

2) 다양한 방법의 검토

회원국은 9개의 사회보장 보호항목을 적절히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국내법과 관습에 따라 동등한 급여가 선원들에게 제공되도록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3) 국제적 협력

각 회원국은 선원을 위한 점진적이고 포괄적인 사회적 보장 보호를 성취하기 위하여 국내환경에 따라 개별적 그리고 국제적 협력을 통하여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5 선원연금협약

이 협약은 1946년 ILO 협약 제71호로 채택되었으며, 23개국이 비준하고 있고, 이 협약의 규정에 따라 선원에 대한 가급연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다수의 국가가 있다는 이유로 그대로 존속하게 되었다(ILO, 1998).

3. 관련 국내 법령

3.1 선원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선원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에 선원 재해보상에 관한 한, 육상 근로자에 비하여 불리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

3.2 요양보상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직무상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린 때에는 그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될 때까지 선박소유자의 비용으로 요양을 시키거나 요양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선원법 제85조 1항).

3.3 승무선원의 부상 또는 질병중의 임금

선박소유자는 승무 중인 선원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직무에 종

사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선원이 승무하고 있는 기간에는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4 상병보상

선박소유자는 요양 중에 있는 선원에게 4월의 범위 안에서 그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될 때까지 매월 1회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상병보상을 행하여야 하며, 4월이 지나도 치유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치유될 때까지 매월 1회 통상임금의 7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의 상병보상을 행하여야 한다.

3.5 선원의 재해보상을 위한 보험가입

선박소유자는 이 법에 정한 재해보상을 완전히 이행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4. 협약 수용 방안

4.1 직무상 질병 또는 부상시 요양보상 및 상병보상

1) 선박소유자의 책임 제한 사유

선박소유자는 선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는 선원이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또는 요양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협약이 고의의 부당행위인 경우에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을 인정하고 있는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는 삭제할 필요가 있다.

3) 상병보상의 기준

선원법 제87조 1항은 직무상 상병보상의 지급 기준을 통상임금에서 평균임금으로 개정하여야 한다.

4.2 직무외 질병 또는 부상시 요양보상 및 상병보상

현행 선원법 제85조 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양기간 3월을 4월로, 상병보상 기준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개정하여야 한다.

4.3 승무선원의 부상 또는 질병중의 임금.

현행 선원법 제50조에서 지급 기준 통상임금은 평균임금으로 하고, 지급 제한 사유 중 중대한 과실은 삭제하여야 한다.

4.4 재정보증

1) 사용자 직접보상 방식의 개선

선박소유자들이 가입하고 있는 보험 및 공제제도는 사용자의 직접보상 방식으로 이를 담당하는 공적기관이 없는 것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房, 2007).

2) 산재보험법의 적용

현행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조 1항 2호 「선원법」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사업에서 「선원법」를 제외하는 것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3) 선원법의 개정

현행 선원법상 재해보상(동법 제85조 내지 제93조) “요양보상, 상병보상, 장해보상, 유족보상, 일시보상 및 장제비”에 관한 규정은 삭제하고, “승무중 직무외의 재해, 행방불명보상 및 소지품 유실보상”은 해상 근로의 특성이 반영된 선원의 특수 재해로 보아 선원법에 그대로 두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것으로 본다.

4.5 노령급여

양호한 외국인 선원의 지속적인 승선을 위하여서는 선원 공급국과 일본의 예와 같이 양자 협정 체결을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일본정령(2006, 2007)).

선원연금에 관한 협약 제71호상의 가급연금제를 국민연금법에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해양수산부, 2007).

5. 결 론

협약의 근본취지에 따라 선원에게 보다 나은 근로조건을 제공하고, 육상 근로자에 비하여 불리하게 적용되는 것은 협약 비준을 준비하고 있는 이때에 개선하여야 될 것으로 본다.

참 고 문 헌

- [1] 김동인(2007), 선원법, 법률문화원, pp.543-545.
- [2] 房東植(2007), “船員災害補償制度의 改善方案에 관한 研究”, 法學碩士學位論文, 韓國海洋大學校 海事產業大學院, p.34.
- [3] 박용섭(1995), “주요 해운국의 선원 사회보장제도-일본과 영국의 선원보험법을 중심으로-”, 海法·通商法 제8권 제1호(한국해사법학회), pp.7-47.
- [4] 全永遇(2007), “2006年 海事勞動協約의 柔軟性規定에 관한 研究”, 해사법연구 제19권 제2호, p.3.
- [5] 全永遇 外(2007), “2006年 海事勞動協約”, 海印出版社.